

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호
「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쪽방주민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
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, 사회적 고립감 등을 겪고 있는 취약
계층으로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.

이에 쪽방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,
쪽방주민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기본적인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,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, 실태조사, 지원사업,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,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